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지원정책

강 기 정(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전공 조교수)

I. 서 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 노년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성원의 변화, 산업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 또한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는 가족과 자녀양육 문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의 아동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양한 보육제도가 대리양육과 유아교육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인해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저출산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건강가정기본계획(2006)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다양한 저출산 요인 지원과 가족의 안정망 유지를 위해 1차적으로 아동 보육에 강력한 정책지원을 발표하였다. 보육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보육문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조치를 취해야할’ 범사회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보육은 일부 기혼여성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마지못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서 빚어지게 된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74.8%라는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 기혼 여성들이 생계유지는 물론 자기개발의 차원에서 취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혜원, 2000). 또한 보육은 고급인력의 확보로 인한 국가 경쟁력신장을 위해서 우리사회가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보육문제를 시설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가족지원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이돌보미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가족해체 예방), 건강가정기본법 제 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제 30조(가정봉사원)을 근거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¹⁾. 2006년도에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실시²⁾ 하고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족해체 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가정봉사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기간 은 ‘07년 1월-12월.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기간은 총 9개월(4-12월)이며, 총 2,691백만원(일반예산)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운영지침, 2007).

본 연구는 2006년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며 아이돌보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결과는 여성가족 정책 입안자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자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자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학계에는 전문인력(건강가정사) 양성의 측면에서 가족지원 정책과 가족지원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운영 현황과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아이돌보미 사업

여성가족부(2007)의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지침에 의하면, 아이돌보미 사업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예상치 않은 잔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아 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가 발생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의 아이돌보미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자녀의 안전한 보호, 놀이지도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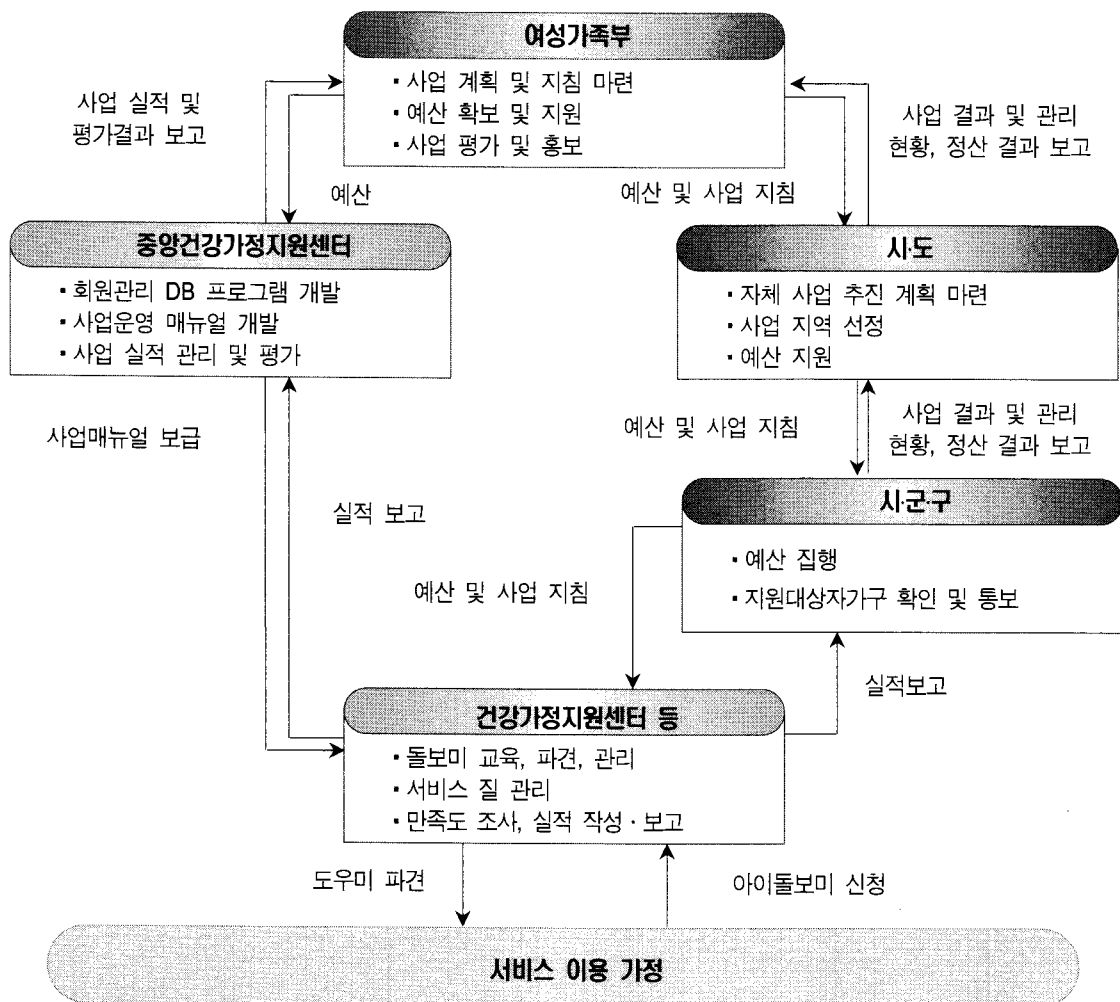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돌봄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가족을 통한 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이웃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시설보육 외 대체적인 양육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시설보육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맞벌이, 임시·일용직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영아, 시간 연장 및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아이의 건강상태나 질병에 따라 시설 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별가정 내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연령, 부모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어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05년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아동연령별 육아지원시설 미이용율은 0세는 93%, 1세는 81.3%, 2세는 62.6%, 3세는 41.9%, 4세는 33.3%, 5세는 20.9%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중점을 두어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탄력적이고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보충적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시설보육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인서비스 개발 관련 법률('05)을 제정하여 3세미만 아동 돌봄에 관한 자택에서의 대인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고 국가가 관리한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05).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 외 시간의 아이 돌봄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하여 탄력적인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위해 양성된 아이돌보미 전문요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집 또는 아이돌보미 전문요원의 집에서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기타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이다(정민자, 2006). 실제로 아이돌보미는 아동, 특히 영유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써,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동연령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및 지속적인 보수교육,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요구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체계도는 <그림 1>과 같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달체계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업을 관리 평가한다. 시도 및 지자체는 자체 사업 추진을 계획하며 예산 확보와 사업 결과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돌보미 교육·파견·관리하며 서비스 이용 가정을 발굴·지원하는 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 자료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침, 여성가족부, 2007.

<그림 1>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체계도

2. 외국의 아이돌보미 사례

일본의 가정보육모제도는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보육시설부족해결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체가 시작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고도성장기인 1950년 교토시, 1958년 오사카시, 1960년 동경도, 오코야마시, 코베시가 가정보육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1969년 동경도는 이용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3살 미만까지로 대폭 낮추면서 지방자치체로 가정보육모제도를 이관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칸토, 키키퀸을 중심으로 가정보육모제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제도의 신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동경도에서는 1972년에 보조제도를 시작하였지만 1990년 동경도 아동복지심의회 답신에서 ‘복잡 다양화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육전개에 있어 현재의 보육실, 가정복지원을 앞으로도 인가보육소와 동등히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가정보육모제도의 확대는 사실상 부정되었다. 그러나 ‘저출산대책’이 요구되면서 가정보육모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가정보육모 등의 재택보육서비스 제공자 육성사업’, ‘가정적 보육제도에 대한 조성사업’과 같이 가정보육모제도가 하나의 보조금 대상사업으로서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소미 나오코, 2004).

프랑스는 1990년 시행된 가정보육모 고용지원제도는 1991년 가정보육모 고용지원수당이 지급되면서 강화되었다. 노동복지부 산하 평가 통계국(DRESS)의 보고에 의하면 1999년 400,000명의 가정보육모가 모자보건국(PMI :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으로부터 자격을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DREES, 2001). 보모로 불리던 이들은 법률의 제정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가정보육모는 의료, 퇴직, 직업병, 실업 등에 대한 혜택을 받으며, 건강보험, 퇴직보험, 직장 내 사고 및 직업병 대비보험 등과 같은 각종 복지보험을 보조받는다(www.assmat.com). 사회보장법에 의하면 가정보육모는 “아동을 보육함으로써 인해 발생하게 된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가정보육모의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아동을 집이나 학교 등에 데려다 주면서 생긴 사고에 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직하였을 때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의 가정 내 보육(family child care)제도는 가정 내 보육제도는 서비스 구매 형태로 보육제공자 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미국의 연령대별 보육형태를 살펴보면, 0~1세 영아보육의 경우 부모 보육이 전체의 약20%, 친척이나 가족 내부인의 보육이 50%이상, 민간 데이케어 보육대상이 22%, 그리고 나머지 9%가 시설보육대상에 해당된다. 즉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보다는 친지의 도움을 받아 가정 내 양육이나 민간 가정 내 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이다(정민자, 2006).

덴마크는 영아와 유아가 각기 다른 기관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영아용 보육시설인 vuggestue, 연령통합 보육시설, 교외유치원, 자연유치원 등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 가정보육에 해당하는 가정탁아모와 사보육(Private-child-care)이 있다(조복희 외, 2003). 덴마크는 보육 보증제를 실시하여 생후 6개월 후부터 보육제공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가정보육 장학사가 50명의 아동을 기준으로 가정보육을 담당하고 있다(서문희, 2003). 또한 가정에서의 보육-보모(childminder)배치는 보모의 집에서 아이들의 소수 그룹을 돌보는 것으로 생후 6개월부터 2~3세

의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보모의 대부분은 여자이며 아이는 5명까지 보모의 집에서 돌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보모가 되는 자격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보모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며 원칙에 따라 보모배치계획을 감독한다(정민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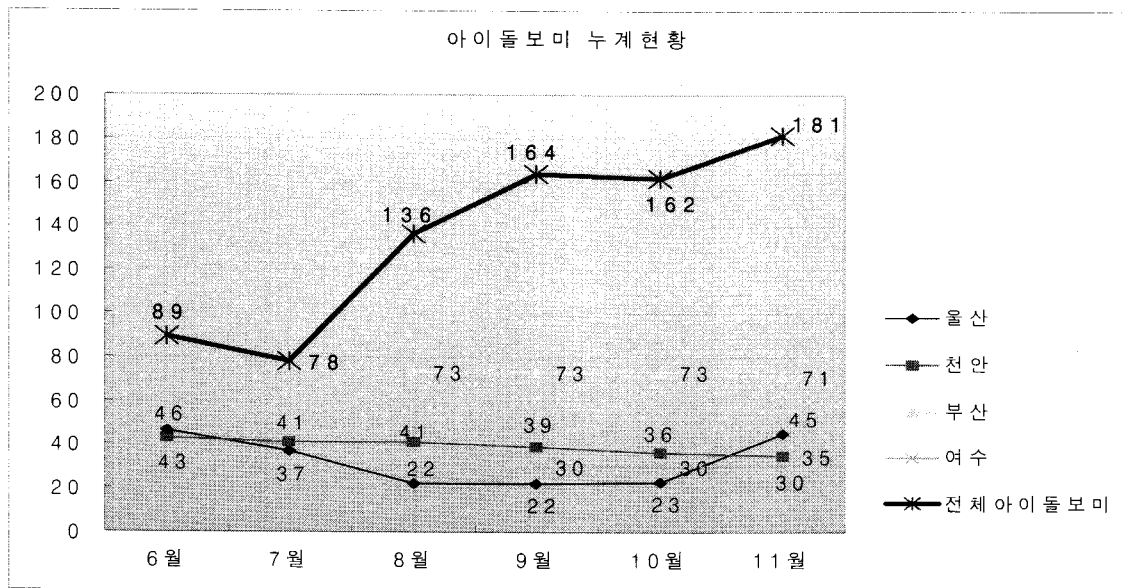
이상에서 일본의 가정보육모제도, 프랑스의 가정보육모 고용지원제도, 미국의 가정 내 보육(family child care)제도, 덴마크의 가정에서의 보육-보모(childminder)배치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해보았다. 이와같은 외국의 아이돌보미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가족환경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모델 개발과 기존 공보육체계와의 연계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아이돌보미 시범운영 현황3)

1) 아이돌보미 활동현황

<표 1>에 의하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생 중 181명이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아이돌보미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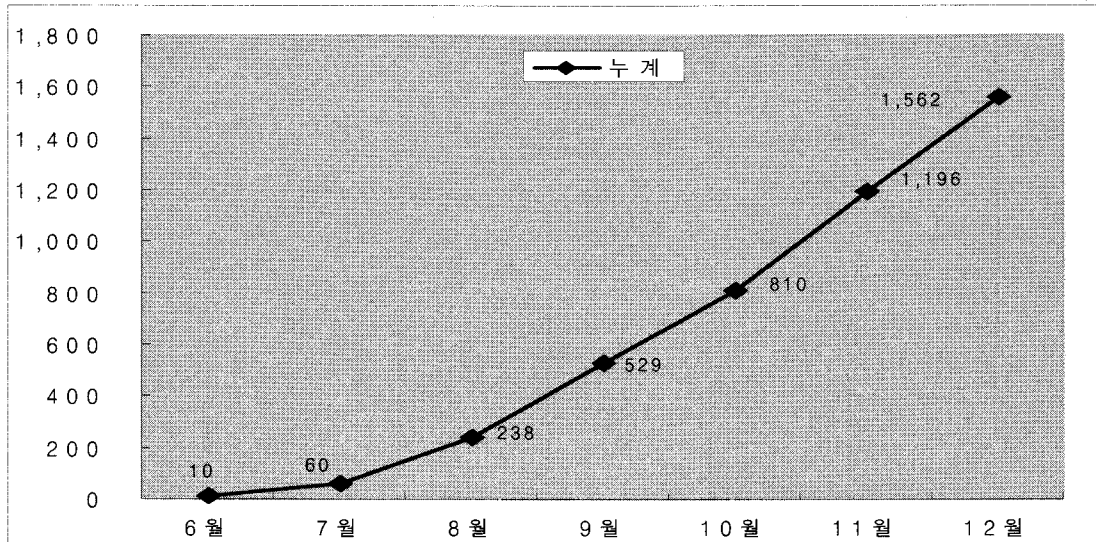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울산	46	37	22	22	23	45
천안	43	41	41	39	36	35
부산	0	0	73	73	73	71
여수	0	0	0	30	30	30
계(명)	89	78	136	164	162	181

3) 아이돌보미사업 주관 부서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기획팀의 자료를 기초로 서술하였습니다. 자료제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아이돌보미 이용 현황

<표 2>는 아이돌보미 연계현황이다. 6월부터 12월 현재 총 1,562건을 연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아이돌보미 이용자 월별 누계현황(2006년)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건)	10	50	178	291	281	386	366	1,562
울산	4	21	13	74	93	139	98	442
천안	6	29	111	132	63	70	118	529
부산	0	0	54	58	68	92	94	366
여수	0	0	0	27	57	85	56	225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 중에서 월 8회 이상, 총 8개월 이상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한 5명과 월 8회 이상,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부모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다. 그리고 아동복지학 전공 교수 1명, 가정학 전공 교수 3명,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1명과 천안시와 울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2명 등 전문가집단 총 7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면접법과 센터의 아이돌보미 관련 문서, 평가회의 자료 등 문헌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의 분석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이돌보미 활동 평가

1) 경제적 가치

아이돌보미는 현재 활동을 통해 월 20만원 내외로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은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한 달에 적어도 30~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확보될 때 아이돌보미가 직업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큰돈은 아니지만 자녀들 간식거리나 의류와 같이 본인이 사고 싶었던 것을 구입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서 돈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 소비를 억제하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2) 성취감과 보람

아이돌보미들은 자신이 활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엄마가 사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해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좋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이 선생님이 존중해 줄 때 일하는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직장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면에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3) 일하는 즐거움

아이돌보미 중 4명은 전업 주부였으며, 사회참여를 원했다고 하였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 돌보는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힘들었던 점

아이돌보미들은 이용자의 아이돌보미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 불결한 집안상태, 이용시간이 식사 시간과 겹쳐졌을 때 식사 문제,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킬 때, 교통편이 불편할 때 힘들었다고 평가하였다.

2. 이용 부모의 서비스 평가

1)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및 자질

아이돌보미의 자질 및 전문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되어 있어서, 일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고, 아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재미있게 놀아주는 분들이 대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이용비용

서비스 이용 부모들은 이용비용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면 기존의 사설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와는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3) 서비스 만족도 및 불편사항

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홍보 부족, 비용, 즉각적인 아이돌보미의 파견 면에서는 보다 보완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3. 전문가 집단의 서비스 평가 및 정책적 제언

1) 안정적인 직업으로의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계 및 실무자 집단 모두 기본활동비를 보장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아이돌보미들이 하루 종일 한 달을 일해도 월 소득 60만원이므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돌보미 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였고 현재는 돈 보다는 단지 일이 하고 싶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좋아하는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생계유지보다는 일이 하고 싶거나 아이돌보는 일을 좋아해서 돌보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돌보미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8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에 한해서 정부에서 월 10만원 정도라도 기본활동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2) 사례관리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현재의 예산과 1명의 전담인력으로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전담인력의 증원, 재정적 지원, 교육비 증액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학계 및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였다.

V. 결론 및 지원정책 제언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이후 지자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 사업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시범 사업 이후 2007년 전국 센터에 실시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역사회에 건강가정을 구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지원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나아가 아이돌보미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웃-가족간 자원교환을 통한 지역 품앗이 돌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이돌보미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유휴 여성인력을 아이돌보미로 양성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가 매우 높은 시점에 전업주부의 양육경험과 전문성은 지역 품앗이 돌봄 네트워크의 인적자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면 아이돌보미를 모집할 때, 지역사회의 여성단체협의회 및 가족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교육과정에 아이돌보

미 직업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전문성,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보미 활동보장 및 지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 아이돌보미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즐거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의 소득이 최소한 월 50만원은 되어야 지속적인 활동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셋째, 전문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대체로 아이돌보미의 자질과 역할,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일부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돌보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검토와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센터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아이돌보미 홍보 및 차별화

서비스 이용부모들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홍보를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시설업체와는 다르게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라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고,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에는 만족하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재 비용보조가 없는 일반이용가정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산확보와 지원체계 강화

현재 예산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담인력 1명으로는 이용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돌보미 사후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담인력을 2명으로 늘이고, 예산도 현재보다 늘이고, 특히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 홍보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연구소(2004). 가정보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 2004-20.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핀란드의 사회보장.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 박혜원(2000). 영아 보육시설의 현황과 과제.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의 과제. 2000년도 한국아동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7-53.

- 서문희(2003), 가정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7-124.
- 서문희·안현애(2004). 가정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미 나오코(2004). ‘가정보육모’제도와 보육자의 의식 변화에 관한 센터연구. 여성연구, p.265~289.
- 이정희(2002). 보육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 여성가족부(2005).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07). 2007년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지침. 여성가족부.
- 이상현(2002). 영리보육의 현실과 정책과제-베이비시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연구원 정책보고서, p.63~86.
- 정민자(2006). 아이돌보미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매뉴얼. 울산대학교, p.22~26,p.45~49.
- 조복희 외(2003). 북유럽 보육시설 현황.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특강, 154-157.
- 정민자 외(2005). 가정봉사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성철(200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운영현황 및 지원정책

고 선 강(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교수)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006년 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고, 2007년 전국의 많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2006년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이돌보미 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은 돌보미 서비스의 질 저하,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의 불 충족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단순히 이용자들의 불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재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사업은 있으나 이용할 수 없는 탁상공론에 그치는 사업으로 각인되어 사장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6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사업운영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 운영결과는 도표와 그래프를 이용한 양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사업 효과 분석은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제시된 아이돌보미 활동현황과 이용현황에 더하여 돌보미와 이용자의 특성, 서비스의 형태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제시된다면,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하였는가? 누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는가? 도대체 어떠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였는가? 실제로 긴급한 육아지원 요구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많았는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많았는가? 이러한 특성의 지역적 차이는 있었는가? 등 참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어디까지의 정보가 수집되었고, 어느 정보까지 연구 자료로 공개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양적자료의 분석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보미, 이용자,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양적인 자료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심층면접의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돌보미들과 이용자들 중 각각의 전형적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자가 면접의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제시하기 보다는 각 주제에 대해 제보자의 언어로 스크립을 제시하는 것도

요약된 주제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전달 받을 수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가정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긴급한 육아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에 더 주력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이는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